

##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

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「소상공인 재난지원금」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2일

상 주 시



### 1. 사업개요

가. 지원내용 :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

나. 지원대상(요건)

- (소상공인)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

구분	기준			비고
	음식·서비스	도·소매	제조 등	
매출액 (10억~120억)	10억 이하	50억 이하	120억 이하	
상시근로자수 (5인~10인)	5인 미만		10인 미만	

- (소재지등)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상주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중인 소상공인
-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. 1. 1. 이전
- (영업중)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 상태가 휴·폐업이 아닐 것
- (1인 1사업체)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
- (대표자 1인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 에게만 지급  
\* 공동대표 동의 필요(동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의사 같음)

## 다. 제외대상
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
- 집합금지,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자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\*별첨 참조
  - 사행성 업종, 변호사·회계사·병원·약국 등 전문 직종
  - \* 단, 유흥주점,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
- 농·축협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(하나로마트, 주유소 등)
- 비영리 기업·단체·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-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
  - \* 태양광발전업, 창고업, 통신판매업, 곳감(생산·제조·판매) 등
  - \* 농축산업(영농조합, 양봉, 농장, 목장, 양어장, 인공수정소, 임산물 등)
- 기타 「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」에서 신청내역을 심사하여 지원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소상공인

## 2. 신청 및 접수

가. 신청기간 : 2021. 2. 3. ~ 2. 26.

나. 신청방법 : 방문 신청(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
\* 대리 신청시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(사본) 제출

\*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신분증(사본) 모두 제출

### 다. 신청서류

- ①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.
- ② 2021년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.
- ③ 신분증 사본 1부. \*대표자(공동대표인 경우 모두), 대리인
- ④ 통장 사본 1부.
- ⑤ 상주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1부. \*가맹점 등록 대상업소의 경우

### 3.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 입금

가. (1차 지급) 2021. 2. 5.까지 접수시 ⇒ 2. 10. 이내 지급

나. (2차 지급) 2021. 2. 26.까지 접수 ⇒ 신청후 10일 이내 지급

\* 단, 심사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.

### 4. 신청시 유의사항

가.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, 중복수급·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

나.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자격 등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판단

다. 지급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.

### 5. 문의처 : 상주시(☎537-6323)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읍면동	연락처	읍면동	연락처
함 창 읍	☎ 537-8901	화 북 면	☎ 537-8913
사 별 국 면	☎ 537-8902	외 서 면	☎ 537-8914
중 동 면	☎ 537-8903	은 척 면	☎ 537-8915
낙 동 면	☎ 537-8904	공 검 면	☎ 537-8916
청 리 면	☎ 537-8905	이 안 면	☎ 537-8917
공 성 면	☎ 537-8906	화 남 면	☎ 537-8918
외 남 면	☎ 537-8907	남 원 동	☎ 537-8919
내 서 면	☎ 537-8908	북 문 동	☎ 537-8920
모 동 면	☎ 537-8909	계 림 동	☎ 537-8921
모 서 면	☎ 537-8910	동 문 동	☎ 537-8922
화 동 면	☎ 537-8911	동 성 동	☎ 537-8923
화 서 면	☎ 537-8912	신 흥 동	☎ 537-8924

# 별첨

#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앞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표준산업분류	업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\*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
\* 기타 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